

2019년도 제2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26.(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19-25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984건(안건번호 제2019-155359호~15627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155359호, 155362호, 155363호, 155364호, 155367호, 155369호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에서 추출한 자막파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155360호, 155361호, 155365호, 155366호, 155368호, 155370호는 무단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막파일로 권리침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19-155371호~155383호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95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58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에 대한 회의록은 비식별 처리할 부분은 없으나, 제2호 보호원장이 요청한 검색결과 제외에 대한 심의는 그대로 공개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사이트명과 접속 가능한 주소가 있음.
제2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저작권 등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제5호 '기타 심의위원회가 비공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임.
보호원 원장이 저작권 보호 시책 집행을 위해 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경우인데, 추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제2호 회의록은 전체를 비공개하자는 의견임.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함.

보호원 원장이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으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선제적으로 미리 알려야 할 내용은 아님.

- B 위원 : 이의 없음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하며,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므로 비공개 의견임.
- D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19-155359호~156279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984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안건번호 제2019-155359호~155370호는 권리자가 요청하여 보호원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이며, 자막공유사이트인 '□□□□'의 이용자가 민원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해외영화의 자막 파일을 무단으로 전송

한 12개 게시물임.

합법 영상물에서 추출한 6개 자막파일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영상물에서 추출한 영어 또는 우리말 자막파일로 자막 파일 제작자가 우리말 번역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아니함.

6개 자막파일은 2019년 개봉한 최신 영화 BluRay, WED-DL에 내장된 자막파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무단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6개 자막파일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막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무단 번역한 자막도 2차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가 아닌 관계로 자막파일 게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막파일을 완전 삭제할 경우 자막파일 게시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원상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에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49143호~15537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자막파일에 대해 출처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 직원이 자막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였음.
- 성원영 전문위원 : ('□□□□' 접속하여 사이트의 게시물 중 '엔젤헤즈폴른' 배포 못합니다' 보여주며)문제가 되는 사이트를 살펴보겠음. 지금 보고 게시는 게시물의 경우 '배급사로부터 공문이 와서 저작권 때문에 배포를 못한다'고 되어 있음.

- D 위원 : DVD에는 캡션이 있어서 AVI파일로 변환하면서 캡션을 자막으로 삽입함.
- B 위원 : 첫 번째 유형의 합법 영상물에서 추출한 자막파일은 복제권 침해이기 때문에 일언의 여지없이 시정권고 대상임.
합법 영상물에서 추출한 자막파일과 무단 번역한 자막파일을 어떻게 분류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무단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표현한 이유는 BlueRay 등에서 추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막파일 업로더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했음. 즉 확인되지 않은 경우 무단 번역 추정이라고 분류하였음.
무단 번역도 두 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복제·전송자가 번역했을 수 있고 제3자가 번역한 것을 가져와서 올린 경우가 있음.
자막파일 제작자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게시자가 번역해서 올린 것으로 본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일부 게시물은 본문에 '오타와 누락, 엔터 등의 간단한 수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작업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A 위원 : 검토보고서의 각주를 보면 '2018년 4월 18일 개최한 제 2018-40회에서 영어자막, 영어대본의 경우 별도의 합법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글자막이나 영어자막 등의 무단배포는 결국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의 불법적인 유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결하였음'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시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포함한 가결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삭제 또는 전송중단을 포함한 가결이었음.

- A 위원 : 검토보고서에서 정리한 적극적 요소인 '1. 자막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고의성 여부 2. 사이트의 영리적 목적 여부 3. 자막 제공자의 사건 외 자막 배포의 규모'를 고려하면 1, 2, 3에 모두 해당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은 경고의 시정권고만으로 충분할 것인지? 이 부분 대한 유형화는 안 되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본 건을 조사하는데 인적 자원이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 유형화하지 못하였음.
- A 위원 :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데 이의는 없으나,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검토한 안건 중에 적극적 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B 위원 : 과거 미드 동호인들이 스스로 번역을 해서 커뮤니티에 업로드를 하였는데, 미국 영화배급사들이 형사고소를 한 적이 있었음. 당시 그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는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함. 게시자가 스스로 번역한 자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음,
- A 위원 : 사이트에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사이트 상단과 오른쪽에 여러 건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음.
- A 위원 : 절충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선별하여 적극적 요소에 합당한 건이면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에 '★★ ★★★★★'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막파일이 2,5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보호원은 최근 3년 이내 개봉된 70개 게시물에 대해 먼저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음.
- B 위원 : 영상물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자막파일이 아니라 동호인들이 번역한 자막파일까지 문제 삼는 이유는 불법적인 영상물과 자막이 결합하면 불법적인 영상물의 다운로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임. SMI나 SRT파일은 복제한 영상물을 무단 이용하기 위한 것임.
- A 위원 : 1기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를 유형화했기 때문에 적극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만 걸러서 시정권고하면 될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미국 2항소법원은 니혼게이지이 신문 사건에서 “added almost nothing new”라고 하면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각주에서 보시는 일본 동경지법 판결도 변안권 침해를 인정했음.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라파에트 판결에서 “한글로 번역한 자막을 원저작물인 영화에 삽입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라 실시했음.
최근 제3분과위원회에서도 원적작자의 허락 없이 만든 콘텐츠라 하더라도 2차적저작물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A 위원 : 기능적 저작물,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 안내서, 요리방법 등에 대한 번역은 단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영화나 만화 번역은 단순 번역이라고 보기 어려움.

미국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 성립 요건 중에 허락을 얻도록 되어 있음.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음.

- D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55366호, 155368호, 155370호는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려움. 단순 번역 수준이라 창작성이 부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계번역일 가능성도 있음.
캡션을 OCR 기능을 사용하여 글자로 인식할 수 있게 추출했다면 창작성이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게시물 본문에 수정했다고 기재되어 있음.
- D 위원 : 원본 자막이 있고 오타와 누락, 엔터의 간단한 수정이라면 원본 자막과 동일하다고 봐야 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면 복제라고 볼 수 있음.
- D 위원 : OCR로 추출한 자막의 출처를 확인해봐야 함.
- 성원영 전문위원 : OCR로 추출한 자막의 출처를 확인했다면 1번 유형으로 분류 하였을 텐데,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2번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B 위원 : 보호원에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미진한 것은 복제·전송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임.
- D 위원 : 번역기가 좋아서 영어로 된 자막을 OCR로 추출하여 번역 하면 동일하게 나옴. 사람이 번역한 것이 아니고 기계 번역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함.

- A 위원 : 보호원에서 조사의 한계가 있어 확인이 어려운 것은 권리자에게 확인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방법도 생각하였으나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민원인에게 일부라도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추가 확인을 요청하지 않았음.
- D 위원 : 불법성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자막을 비교하여 확인해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함.
- B 위원 : 이번에 한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1번과 2번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권리자에게 확인할 시간을 주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보완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방법도 있음.
- D 위원 : 권리자는 우리말로 된 자막을 가지고 있을 것임. '□□□□' 사이트에 올라간 자막과 대조해보면 얼마나 상이한지 확인 가능할 것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19-155359호~155370호는 권리침해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결정을 유보하고 보완된 자료로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55371호~155383호는 민원인이 웹하드 사이트인 '▲▲▲▲' 이용자가 판매를 위해 올린 다수의 만화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해

당 만화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55371호~15538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 이견이 없음.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55371호~15538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5384호~156279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방송 ‘쌈니다 천리마마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5521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네이버 웹툰에서 1부 105화, 2부 53화를 연재한 웹툰을 tnV에서 드라마로 제작하였으며, 2019년 9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방송 저작물을 모바일웹하드 ‘○○○○’에서 판매함.
보호원이 모니터링한 날짜는 2019년 11월 9일인데 심의시스템에 등

록한 날짜는 2019년 11월 22일임.

보호원이 불법복제물을 조사하여 채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웹하드의 불법복제물을 방치하였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채증 날짜와 심의 요청 날짜 간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음.

(방송 '청일전자 미쓰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55525호는 tvN에서 2019년 9월 25일부터 2019년 11월 14일까지 방영한 16부작 드라마로 모바일웹하드 '○○○'에서 판매한 사안임.

보호원이 모니터링한 날짜는 2019년 11월 7일인데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는 2019년 11월 22일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담당자가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2주 동안 불법복제물 확산을 방관한 결과가 됨.

(방송 '모두의 거짓말'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55529호는 OCN에서 2019년 10월 12일부터 현재 방영 중인 16부작 국내 드라마이며, 모바일웹하드 '○○○'에서 판매하고 있음.

보호원이 모니터링한 날짜는 2019년 11월 7일인데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는 2019년 11월 22일임.

(영화 '엔젤 해즈 폴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55686호는 2019년 11월 25일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미국 영화임.

(프로그램 'Adobe Photoshop CC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55977호는 Adobe에서 출시한 Photoshop CC 2019 버전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개인은 24,000원, 기업은 42,900원에 판매 중이며, 7일 간 무료 체험할 수 있음.

(게임 '토탈워 : 삼국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56145호는 웹하드 '◆◆◆'에서 판매하는 게임 저작물로 2019

년 5월 23일 출시되었고 47,840원에 판매하고 있음. 배급사는 세가(주)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55384호~15627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채증한 날짜와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날짜가 많이 차이 나는데 많이 채증해 놓고 천천히 등록하는 것인지, 담당자 실수로 시스템에 늦게 등록한 것인지에 대한 사유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함.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원 기능에 비추어볼 때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시정이 안 된다면 보호원 원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함.
- A 위원 : 기존에도 보호원의 채증일과 심의시스템 등록일이 차이나는 안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 민원인이 신고한 건과 모니터링을 마친 건은 지체하지 말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 달라고 전달하였음.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의 온라인대응팀장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번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함.
- A 위원 : 채증일과 등록일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정현순 전문위원 : 현재 시스템은 접수와 심의 기능이 함께 존재하는데 차년도에는 시스템의 기능을 심의요청일, 심의단계에서의 소요시간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발하고, 통계를 확인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팀 간 협조를 통해 개선할 예정임.

- D 위원 : 'photoshop cc 2019'에 제품번호를 제공하여 웹하드에서 판매하고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photoshop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라이선스 인증 후에 채증한 자료를 보호원이 제출하고 있어 크랙 또는 제품번호를 제공했다고 보면 될 것임.
- D 위원 :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설치 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 제품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시정권고 하기에 애매하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작년 심의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음. 추후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제품번호를 제공하는지 크랙인지를 정리하여 보고하겠음.
- C 위원 : 웹하드 등의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B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 D 위원 : 해당 안전들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며,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5384호~156279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

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55359호~155370호는 권리침해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결정을 유보하고 보완된 자료로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함. 그 밖에 안전번호 제2019-155371호~15627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6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3.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